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20. 10. 8.>

제대군인(자녀)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

장기복무 제대군인	등록번호		성명		생년월일(성별)	
	주소	(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)				
교육 지원 대상자	관계		성명		생년월일 (성별)	
	학교명		학과		학년	
교육 지원 기산일(시작일)				용도	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보조	
제출처 (학교명)						

위 사람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 훈 지 청 장 직인

이 증명은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효합니다.

※ 위 학생에게 휴학·퇴학·정학 등의 취학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

담당부서명: 과장: 주무: 담당자: 전자우편주소: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